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곰 사육 종식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, 사육곰 농가의 안전사고 신고 조치 및 인도적 처리 의무 등을 규정한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119호, 2024.1.23. 공포, 2025.1.2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기 위함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2)
- 나.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2)
- 다. 용도변경, 질병 등으로 인한 사육곰 처리 시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별표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거목 중 “법 제23조제6항”을 “법 제23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너목 중 “법 제23조제7항”을 “법 제23조제6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더목 중 “법 제23조제8항”을 “법 제23조제7항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머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머.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경우	법 제73조 제3항제9호의2	20	50	1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

별표 2 제2호도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보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로목과 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로. 법 제34조의25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8호	100	150	200
모. 법 제34조의26을 위반하여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육곰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73조 제2항제9호	100	150	200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환경부 생물다양성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243